



제439회국회 (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건설기계 연식 및 조종사 연령 제한 금지 등》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794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제2219794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정의 신설(안 제2조제16호 신설)	3
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 발급 여부 등 확인 등 발주자의 의무 신설(안 제68조의3제1항 후단 신설)	13
다. 발주자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 지급 (안 제68조의5 신설)	19
라. 건설기계 연식 및 조종사 연령 제한 금지 (안 제68조의6 신설 등)	24

I.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제2219794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7. 7.

다. 회 부 일 : 2026. 7. 2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설 현장에서 카고크레인 등은 실질적인 건설공사의 핵심 장비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직접지급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대여업자들이 부도와 도산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또한,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발주처와 원수급인이 법적 근거 없이 자체 규정을 통해 건설기계의 연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특정 연령 이상의 조종기사에 대해 현장 출입을 관행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숙련 인력의 손실과 기술 단절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카고크레인 등 실질적 건설공사 참여 장비를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 대상에 명시하여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와 지급보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장비의 연식이나 기사의 연령이 아닌 ‘성능 및 안전 기준’과 ‘건강·운전 적성 검사’ 등 객관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현

장 출입을 허용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조종사의 실질적인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8조의3, 제68조의5, 제68조의6 등).

3. 검토의견

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정의 신설(안 제2조제16호 신설)

개정안은 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와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카고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건설공사 현장에 대여하는 자를 ‘건설기계 대여업자’로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5. (현행과 같음) 16. “ <u>건설기계 대여업자</u> ”란 「 <u>건설기계관리법</u> 」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 및 「 <u>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u> 」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카고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건설공사 현장에 대여하는 자를 말한다.

현행법은 건설기계 대여, 건설기계 대여업자,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동 용어들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용어들에 대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의 규정¹⁾을 적용할 수 있음.

1)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기계 대여, 건설기계 대여업자,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의 용어는
 현행법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²⁾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³⁾ 제38조
 의3(보복조치의 금지),⁴⁾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⁵⁾ 제86조의4

3.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해체재
 활용업을 말한다.

4. “건설기계대여업”이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④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제작납품업자”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사용하는 기자재를 대여하는 자
 (이하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제8항 및
제35조(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6호,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
 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
 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
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본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④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 구입 또는 대여, 건설기계 대여 또는 건설근로자 고용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
 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
 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
 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
 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
 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
 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인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
 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이익행위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발주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

②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행위등 및 건설사업자의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

(상습채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⁶⁾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의 사용 금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등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불이행위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건설사업자”로, “수급인”은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본다.

5)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④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정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과 보증 관련 당사자 등의 이행사항 및 그 밖의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 또는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상습채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34조제1항(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처분(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은 제외하며,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횟수를 1회로 본다)을 2회 이상 받은 건설사업자 중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및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의 채불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이하 “상습채불건설사업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상습채불건설사업자의 사망, 실종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 규정들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7)에 규정된 불도저,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건 설 기 계 명	범 위
1. 불도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착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지게차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과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5. 스크레이퍼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6. 덤프트럭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7. 기중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8. 모터그레이더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9. 롤러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10. 노상안정기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 콘크리트벙칭플랜트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2. 콘크리트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3. 콘크리트살포기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 콘크리트믹서트럭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5.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7. 아스팔트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 아스팔트살포기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 골재살포기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 쇄석기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로더 등 27종이 해당되는데,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의 적용⁸⁾을 받는 카고

건 설 기 계 명	범 위
21. 공기압축기	공기배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22. 천공기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3. 항타 및 항발기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24. 자갈채취기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5. 준설선	펌프식·바켓식·딛퍼식 또는 그레브식으로 비자향식인 것. 다만,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26. 특수건설기계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27. 타워크레인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계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일반형·덤프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구난형 및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중 같은 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밴형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1.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은 것
2. 승차 정원이 3명 이하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가.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의 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 차량

크레인⁹⁾ 등의 장비들도 사용되고 있음.

개정안은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건설현장에 대여하는 장비에 대해서도 그 사업자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여, 현행법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카고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건설공사 현장에 대여하는 자’와 관련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의¹⁰⁾하고 있고, 「화물

나.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자동차의 범위(제2조관련)

2. 유형별 세부기준

종 류	유 형 별	세 부 기 준
화 물 자 동 차	일 반 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 프 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 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 수 용 도 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 수 자 동 차	견 인 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 난 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 수 용 도 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용도용인 것

9) 「트럭탑재형크레인(CargoCrane) 안전보건작업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3.9.

- “트럭 탑재형(Cargo Crane)”이라 함은 이동식 크레인의 한 종류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을적재, 하역 등에 사용하는 크레인을 말한다

자동차법」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과 동 사업들로 구성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¹¹⁾을 규정하고 있어,

「화물자동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기계관리법」 상의 ‘대여’의 개념을 적용함에 있어 법 체계상의 정합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동 개정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다음과 같음.

국토교통부는 현행 법체계는 건설기계의 종류·업(業) 등에 대해서는

10)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4. “건설기계대여업”이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로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화물이 이사화물인 경우에는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정보망(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인 운송가맹점만을 말한다)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현행법은 이를 차용하는 구조로, 건설기계 개념을 두 법이 달리 규율할 경우 법 체계에 모순이 발생하고, 「화물자동차법」의 규정상 ‘대여사업자’라는 개념의 성립이 어려워 ‘건설공사현장에 대여하는 자’의 의미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임.

대한건설협회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대여 개념을 신설하는 경우, 법 체계 간의 모순 및 타 법률에 대한 편법적인 계약 형태에 특례를 주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대상에 카고크레인 등을 포함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에 카고크레인 등을 추가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전국개인중대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카고크레인은 건설기계가 아니라 하역장치가 보완된 화물자동차로서, 건설기계로 편입할 경우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화물운송 허가권과의 법적 충돌 및 권한 축소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임.

참고1

건설기계의 종류(27종)

01. 불도저 	02. 굴착기 	03. 로더 	04. 지게차 	05. 스크레이퍼 
06. 덤프트럭 	07. 기중기 	08. 모터그레이더 	0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벙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쇠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향타 및 향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노면측정장비 	콘크리트믹서트레이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수목이식기 	터널용고소작업차 	트럭지게차 	

참고2

트럭 탑재형 크레인(CargoCrane)의 구조



※자료: 「트럭 탑재형 크레인(CargoCrane) 안전보건작업지침」 (2013.9.), p.2., 산업안전보건포털 (<https://portal.kosha.or.kr/>)

개정안은 발주자로 하여금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와 실효성을 확인하고, 수급인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를 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 13 –

현행	개정안
② ~ ⑥ (생략)	<u>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인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u> ② ~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68조의3¹²⁾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함)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1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④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정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과 보증 관련 당사자 등의 이행사항 및 그 밖의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 또는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있으며,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¹³⁾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제6항¹⁴⁾에서는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 또는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공공공사와 달리 민간공사의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하

1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①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2.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3.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14)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⑥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 또는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 발급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은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구분 없이 발주자에 대하여 보증서 발급 여부 및 실효성 확인, 수급인 등의 보증서 발급 의무 위반 시 제재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을 방지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 됨.

다만,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현행법 제68조의3제1항¹⁵⁾은 본문(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현장별 보증서 발급 및 발주자에 대한 제출)과 단서(소규모공사 등에 대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계약별 보증서 교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 구조에 후단을 신설하여 보증서 ‘발급’ 여부 및 실효성 확인 등

15)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 보증서 ‘교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단서의 규정에는 발주자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보이는바,¹⁶⁾

공공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의 보증서 ‘제출’ 또는 ‘교부’ 여부 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68조의3제6항¹⁷⁾의 개정을 통해 해당 의무의 주체를 민간 발주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발주자로 하여금 수급인 등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건설사업자에 대한 침익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건설사업자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하여

16) 「법제기준과 실제」, 국회사무처 법제실, 2024.5., p.84

- ‘전단/후단/단서’로 구성된 조항에서 단서가 ‘전단의 단서’인지 ‘후단의 단서’인지 여부와 ‘본문/단서/후단’으로 구성된 조항에서 후단이 ‘본문의 내용을 보충하는 후단’인지 ‘단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후단’인지 여부가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다.

17)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⑥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 또는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현행법 제81제4호,¹⁸⁾ 제82조제1항제8호¹⁹⁾에서 각각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보호를 위해 발주자에게 보증서 확인 의무를 부여하려는 취지에 동의하며, 다만 민간 발주자의 의무 확대는 현행법 제68조의3제6항을 개정하는 방안이 적절하고, 발주자의 건설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현행법에 따른 제재 규정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관련 단체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재’에 대하여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대한건설협회), 현행법에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 엄격한 제재가 규정되어 있어 중복제재의 우려(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있다는 입장임.

18)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4.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19)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 발주자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 지급(안 제68조의5 신설)

개정안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여대금을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8조의5(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납은 오랜 기간 동안 그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대한건설기계협회에 설치되어 있는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에 신고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납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간 520건~594건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납이 신고되었었고, 체납금액은 연간 93억 3,800만원에서 159억 9,800만원임.

【 건설기계임대료채납신고센터 신고 접수 및 회수 실적 】

연도	신고(접수)		회수			
	건수	금액	건수	회수율	금액	회수율
2021	520건	93억 3,800만원	391건	75.19%	78억 2,500만원	83.80%
2022	569건	121억 9,700만원	390건	68.54%	97억 9,900만원	80.34%
2023	589건	159억 9,800만원	341건	57.89%	113억 4,700만원	70.93%
2024	594건	118억 6,900만원	368건	61.95%	76억 3,100만원	64.29%
2025	571건	95억 8,300만원	345건	60.42%	54억 4,100만원	56.78%

※자료: 국토교통부(2026.8. 기준)

*주-회수건수/금액은 신고연도 기준으로 정리된 자료

(예) 2022년 신고건수가 2023년 회수되었어도 2022년 회수건수에 산정

건설기계 대여대금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건설기계 대여업자’로 이어지는 건설공사의 단계적 특성상,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단계에서 대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계좌가 압류되는 경우 등에 채납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어 건설공사의 대금 지급 절차에 대한 개선 필요성 또한 제기되어 왔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²⁰⁾는 일정한 요건에

20)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거나(현행법 제35조제1항) 직접 지급하도록(현행법 제35조제2항) 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납을 방지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삭제 <2012. 12. 18.>
-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것으로 보임.

건설공사에서의 공사대금 체납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외에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가설기자재 대금 등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의 체납 방지를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의무 이용을 확대하는 등 지급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 본법 일부개정법률」이 2026.8.20.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동 법률은 ①공공공사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에 대하여 발주자 · 수급인 · 하수급인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 지급 · 수령을 의무화하고, ②발주자로 하여금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는 방식 등으로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법률에 따른 제도가 2027.1.1.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납 개선 효과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상의 발주자 직접 지급 규정은 하도급, 건설기계, 가설기자재 등 대금이 제때 지급된 못하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지급 방식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건설기계 대여계약이라는 이유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의 직접 지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2027.1.1.부터 발주자 직접 지급 방식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도 유사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라. 건설기계 연식 및 조종사 연령 제한 금지(안 제68조의6 신설 등)

개정안은 발주자 및 수급인이 건설기계의 연식이나 건설기계조종사의 연령만을 이유로 현장 출입 및 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을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8조의6(건설기계 및 조종사의 현장 운용 기준) ① 발주자 및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연식이나 조종사의 연령만을 이유로 현장 출입 및 장비 사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작업의 성격상 조종사의 신체적·인지적 능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상태, 시력, 청력, 반응속도, 인지기능, 조종적성,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및 적성검사 합격 여부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작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기준, 검사 방법, 검사 주기 및 결과의 활용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조종사 및 건설공사 장비조종사에 대한 일률

현행	개정안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 12. (생략) <u><신설></u>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5. (생략) <u><신설></u>	<u>적 연령제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u> 제81조(시정명령 등) ----- ----- ----- ----- 1. ~ 12. (현행과 같음) <u>13. 제6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출입 및 장비 사용을 제한한 경우</u> 제99조(과태료) ----- ----- ----- 1. ~ 15. (현행과 같음) <u>16. 제6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출입 및 장비 사용을 제한한 자</u>

건설현장에서는 사고 예방 및 작업 효율화를 명분으로 건설기계의 연식이나 건설기계 조종사의 연령을 제한하는 사례들이 다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건설기계관리법」은 제13조²¹⁾에서 ‘정기검사’로서

21)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 등록검사: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²²⁾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²³⁾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제29조²⁴⁾에서는 건설기계조종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2. **정기검사**: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3. **구조변경검사**: 제17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4. **수시검사**: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검사

22)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①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3)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①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에서 나오는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24)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건설기계조종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법 제29조에 따라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6조(적성검사의 기준등) ①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적성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두눈을 동시에 뜨고 쥔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0.7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3이상일 것
2.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력이 80퍼센트 이상일 것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해 연식제한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사용 및 운행을 금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²⁵⁾

이에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장비이고 정기적성검사를 통해 건설기계조종이 가능한 조종사임에도, 건설사업자가 안전사고 예방 등을 명분으로 연식과 연령을 제한하여 겪게 되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에 대하여 법정 정기검사 및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한 장비 및 조종사에 대한 과도한 연식 또는 연령 제한을 자제할 것을 협조 요청하고, 소속·산하기관에 대하여는 소관 건설현장에 과도한

3. 시각은 150도 이상일 것

4. 법 제2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개정 및 사용)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

제7조(원재료 검사 등) ⑩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해 연식제한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사용 및 운행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연식 또는 연령 제한 등을 지도·감독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²⁶⁾

개정안은 이같은 건설기계 연식 및 조종사 연령 제한 자체 요청을 법제화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조종사를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정기검사 및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한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현장에서 불합리하게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동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건설기계 연식 및 연령 제한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건설기계조종사의 입장에서는 생업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사항으로, 그 제한에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해 보임.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²⁷⁾과 같이 사업주 또는 경영

26) “건설기계 연식제한 자체 및 지도·감독 요청”, 국토교통부 공문, 2022.3.8. 시행
“건설현장 반입 건설기계 연식 및 조종사 연령 제한 자체 권고”, 국토교통부 공문 2025.2.10. 시행

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책임자들에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들이 있어, 건설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발생 확률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어 보이는바,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동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건설기계 연식 및 건설기계조종사 연령과 건설현장 사고 발생 간의 상관관계 여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이며, 또한 일률적 연령제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해당 기준으로서 규정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관행 개선을 통해 건설기계 대역업자 및 조종사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다만, 건설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한 건설사의 경영상 결정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대한건설협회는 우수한 장비 및 조종사를 선택하여 시공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건설사업자의 권리이자 계약 자유 원칙의 핵심이고, 건설사업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행정제재·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므로 법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자체 안전기준 마련·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기계 및 조종사의 현장 운용기준은 계약

당사자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통해 정할 사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고, 건설기계 종류와 작업 환경에 따라 요구되는 기준이 상이하므로 획일적인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임.

대한건설기계협회는 법률에 따른 정기검사 및 적성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연식과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